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1차 국토교통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임태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548호)

2024. 11.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임태영의원 대표발의(제2204548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3
가. 건설공사에서의 불공정행위 금지 사항 추가 등(안 제38조 등)	3
나. 공공건설공사 발주자의 불공정행위 확인 의무 신설(안 제26조 등) ..	13

I. 업무영의원 대표발의(제2204548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업무영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4. 10. 4.

다. 회 부 일 : 2024. 10. 7.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현장에서 건설인력 채용 및 장비 사용 등은 건설사업자의 고유 권한이나, 최근 특정 건설인력의 채용 및 장비 사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사를 방해하는 등 공정한 건설시장의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공사비 상승 등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설인력 채용 및 장비 사용을 강요하거나 금품 요구 및 공모 행위 등을 금지하는 한편, 건설현장에서 불법·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공사의 발주자에게는 관리의무를, 건설사업관리자 및 수급인에게는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등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를 확보하여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과 품질 관리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건설현장에서 건설인력 채용 및 장비 사용 강요 등 건설공사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건설사업관리자 및 수급인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함(안 제26조제7항 및 제38조제5항).
- 나. 건설현장에서 건설공사의 공정성을 부당하게 침해하여 건설사업자의 적정한 시공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8조제4항, 제95조의2제4호의2).
- 다. 불법하도급 및 불공정행위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8조의4제3항).
- 라. 공공공사의 발주자에게 건설공사 현장에서 불공정행위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87조의3제1항).

3. 검토의견

가. 건설공사에서의 불공정행위 금지 사항 추가 등(안 제38조 등)

현행	개정안
제26조(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 수행 등) ① ~ ⑥ (생략) <u><신설></u>	제26조(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 수행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u>⑦ 건설사업관리자는 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건설기술인 및 건설근로자 등 건설공사 관계인(이하 “건설공사관계인”이라 한다)이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u>
<u>⑦·⑧</u> (생략)	<u>⑧·⑨</u> (현행 제7항 및 제8항과 같음)
제38조(불공정행위의 금지) ① 발주자 및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하도급공사를 포함한다)의 시공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처의 지정 등으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불공정행위의 금지) ① ----- ----- ----- ----- <u>. 이하 같다)</u> ----- ----- ----- ----- -----.
<u>②·③</u> (생략) <u><신설></u>	<u>②·③</u> (현행과 같음) <u>④ 누구든지 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의 공정성을 침해하거나 적정한 시공을 방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u>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38조의4(불공정행위의 신고 등) ① · ② (생략) <u><신 설></u>	<u>아니 된다.</u> <u>1. 건설근로자 채용을 청탁하거나 특정인의 채용을 강요하는 행위</u> <u>2. 특정한 건설기계 등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장비나 자재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행위</u> <u>3.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으로 건설공사 현장 및 출입구를 점거하여 건설공사를 방해하는 행위</u> <u>4.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전·물품·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u> <u>⑤ 수급인은 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제4항에 따라 금지하는 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신고해야 한다.</u> 제38조의4(불공정행위의 신고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 접수된 사항의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공사관계인,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 밖의 건설공사 관계 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u>

현행	개정안
③·④ (생략) 제9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략) <신설> 5. (생략)	야 한다.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95조의2(벌칙) ----- ----- ----- -----.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제38조제4항을 위반한 자 5. (현행과 같음)

먼저, 안 제38조제4항은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에서 누구든지 건설근로자 채용을 청탁하거나 특정인의 채용을 강요하는 행위, 특정한 건설기계 등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장비나 자재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공사의 공정성을 침해하거나 적정한 시공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현행법 제38조¹⁾에서는 발주자 및 수급인이 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하도급공사를 포함한다)의 시공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처의 지정 등으로

1)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불공정행위의 금지) ① 발주자 및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하도급공사를 포함한다)의 시공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처의 지정 등으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제22조, 제28조, 제34조, 제36조제1항, 제36조의2제1항, 제44조 또는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하여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부당한 특약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발주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경우로서 제29조제6항에 따라 통보 받은 하도급계약 등에 제2항에 따른 부당한 특약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 등의 내용변경을 요구하고, 해당 건설사업자의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하거나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하여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는 등 건설공사에서의 불공정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건설현장에서 건설사업자의 고유 권한인 건설인력 채용 및 장비 사용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특정 건설인력의 채용 및 장비 사용을 강요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노조 전임비를 요구하거나 공사를 방해하는 등 공정한 건설시장의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가 발생한 바 있음²⁾.

개정안은 이와 같은 건설현장에서의 불공정행위가 공사 중단, 공기 지연 등을 유발하여 건설 공사비를 상승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침체된 국내 건설업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현행법 제38조³⁾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에서의 불공정행위 금지에

2) '채용 강요·금품 갈취' 건설노조 간부 14명 재판행(조선일보, 2023년 4월 12일)
'건설현장 채용 강요'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법정구속(YTN, 2023년 3월 10일)
'조합원 채용 강요'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4명 '유죄 확정'(스카이라이프, 2024년 8월 25일)

3)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불공정행위의 금지) ① 발주자 및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하도급공사를 포함한다)의 시공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처의 지정 등으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제22조, 제28조, 제34조, 제36조제1항, 제36조의2제1항, 제44조 또는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하여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부당한 특약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발주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경우로서 제29조제6항에 따라 통보 받은 하도급계약 등에 제2항에 따른 부당한 특약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 등의 내용변경을 요구하고, 해당 건설사업자의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관한 사항에 건설근로자 채용을 청탁하거나 특정인의 채용을 강요하는 행위 등과 같은 불공정행위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보임.

최근 국토교통부의 건설현장 노조 불법행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도의 경우 채용 강요, 장비사용 강요, 노조 전임비⁴⁾ 강요 및 타워 크레인 월레비⁵⁾ 등 건설현장에서의 불공정행위 요구가 발생한 바 있고, 2024년도의 경우에도 OT비(초과근무수당) 강요, 채용 및 부당 금품 강요 등과 같은 불공정행위 요구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건설현장 노조 불법행위 실태조사 결과 주요 내용 >

구 분	설문조사 결과
2022년도	① 타워크레인 월레비(58.7%), ② 노조 전임비 등 강요(27.4%), ③ 채용강요(2.8%), ④ 장비사용 강요(3.3%), ⑤ 기타 부당금품 요구(0.8%), ⑥ 태업(1.8%), ⑦ 현장퇴거불응(0.8%), ⑧ 출입방해(1.2%), ⑨ 임의추가인력 투입(0.8%), ⑩ 레미콘 운송거부 등(2.4%)
2024년도	① OT비(초과근무수당) 등 강요(87.7%), ② 채용 강요(10.5%), ③ 부당금품 강요(0.7%), ④ 공사 방해(0.7%), ⑤ T/C 성실 의무 위반(0.4%)

※자료: 국토교통부

이러한 건설현장에서의 불공정행위는 건설사업자의 적정한 경제적 이익 추구를 위한 인력 및 장비의 자율적 선택권을 약화시킴으로써 공사비 원가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이는 결국 발주자, 건설사업자

4) 노조전임비란 노동조합법상 유급 근로시간 면제 제도(노조의 필수 활동에 한해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면서 근로시간을 면제해 주는 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조합 소속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등 노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은 근로제공 없이도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임.

5) 타워크레인 월레비란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월급 이외로 주는 비공식적 웃돈을 말함.

및 일반 국민의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음을 고려해 볼 때, 개정안과 같은 불공정행위 금지 규정 신설은 건설시장에서의 공정질서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입법으로 보임.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건설근로자의 채용 또는 특정한 건설기계 사용 강요 금지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건설사업자의 경영상 자율적 선택권이라는 이유로 특정 조합원의 고용 및 건설기계 사용 등이 배제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므로 이러한 측면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해 보임.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에서는 개정안에서 금지하고 있는 채용 및 장비 사용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한 범위와 정의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일반적인 교섭, 대화 등의 경우에도 건설회사가 노조의 이러한 교섭 행위를 자의적인 판단하에 ‘강요 행위’라고 주장할 경우 건설노조원이 형사적 처벌을 일방적으로 감내할 수밖에 없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임.

또한, 동 조합에서는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전·물품·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타워크레인 성과금(월레비) 근절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타워크레인 월레비는 초과근무, 위험작업, 초과성과 등에 대해 건설사업자가 필요에 의해 지급한 일종의 관행적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이러한 월레비의 발생 책임을 타워크레인조종사들에게만 돌리는 것은 과도한 문제라는 입장임⁶⁾.

다음, 안 제26조제7항은 건설사업관리자로 하여금 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건설기술인 및 건설근로자 등 건설공사 관계인(이하 ‘건설공사관계인’이라 한다)이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임.

아울러, 안 제38조제5항은 개정안에서 추가하고 있는 불공정행위를 수급인이 알게 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6) 건설사의 월레비 지급에 대해서는 수십년간 지속된 관행으로, 사실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 성격을 가지게 되었고, 건설사가 공사입찰시 월레비 등을 견적금액에 반영한 점, 철근콘크리트협의회에서 정한 상한선 등을 볼 때 소송을 제기한 건설사가 원청 및 기사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강제로 월레비를 지급했다고 볼 증거가 없음(광주고등법원, 2023. 2.16. 선고 2021나22465 부당이득금 판결)

이는 건설사업관리자와 수급인⁷⁾의 경우에는 각각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설계,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거나, 건설공사에서 하도급을 주는 상위 역할을 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시공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관리자 및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감안하여,

건설사업관리자 및 수급인에게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 등의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건설공사에서의 건설사업관리자와 수급인의 책임 및 불공정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서는 건설사업관리자 및 수급인이 불공정행위를 발견 하더라도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건설사업 관리자 및 수급인이 불공정행위 조사 등에 따른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해 임의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건설공사에서의 불공정행위를 근절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신고 의무 규정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는 불공정행위 신고 의무 위반 시 이에 대한 처벌 규정도 함께 마련하는 방

7)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3.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

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수급인이 불공정행위에 연관되어 있을 경우 수급인이 건설공사와 관련한 불공정행위 신고를 의도적으로 지연·묵살할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바,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불공정행위 적발의 수월성을 위해서는 수급인 외에 발주자와 하수급인 및 건설근로자 등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불공정행위를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주체에 발주자 및 건설공사관계인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다음, 안 제38조의4는 불공정행위 신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신고, 접수된 사항의 처리를 위해 발주자, 건설공사관계인,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 현행법 제49조8)에 따른 건설사업자 실태조사 및 제87조의39)에 따른 외

8)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91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건설사업자로부터 그 업무, 재무관리 상태, 시공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공사 시공에 필요한 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국인 근로자 고용 적법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의 자료 제공의 요청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임.

사업자, 그 밖에 건설공사 관계 기관(이하 이 조에서 "건설공사 관계 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시공 상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공사 관계 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9)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의3(공공건설공사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관리) ① 공공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적법하게 고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공공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확인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나. 공공건설공사 발주자의 불공정행위 확인 의무 신설(안 제26조 등)

현행	개정안
제87조의3(공공건설공사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관리) ① 공공건설공사의 발주자는 <u>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적법하게 고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u> <u><신 설></u> <u><신 설></u> ② 공공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확인에 필요한 경우에는 <u>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u>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공공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u>수급인 및 하수급인이</u>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7조의3(공공건설공사에 대한 관리) ① ----- -----<u>다음 각 호의 사항을</u>----- -----. 1.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적법하게 고용하고 있는지 여부 2. 발주한 공사의 건설현장에서 제38조제4항에 따른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 ② ----- ----- -----<u>건설공사관계인</u>----- ----- -----. ③ ----- -----<u>건설공사관계인</u>----- ----- ----- -----.

안 제87조의3제1항은 공공건설공사의 발주자로 하여금 발주한 공사의 건설현장에서 안 제38조제4항¹⁰⁾에 따른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공공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등을 의미¹¹⁾하는데, 개정안의 취지는 민간공사가 아닌 공공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그 시공과정 등에 있어 민간공사보다 더 공정하고 합법적인 공정관리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공공건설공사 발주자로 하여금 해당 공사현장에서는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 주의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되어 보임.

10) 개정안 제38조제4항(신설) 주요내용

④ 누구든지 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의 공정성을 침해하거나 적정한 시공을 방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건설근로자 채용을 청탁하거나 특정인의 채용을 강요하는 행위
2. 특정한 건설기계 등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장비나 자재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으로 건설공사 현장 및 출입구를 점거하여 건설공사를 방해하는 행위
4.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전·물품·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11)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이하 이 조 및 제87조의3에서 "공공건설공사"라 한다)에 대한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3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① 법 제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아울러, 개정안 제87조의3제2항 및 제3항은 공공건설공사의 발주자가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에 안 제38조제4항에 따른 불공정행위 발생 여부가 추가됨에 따라 그 확인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청 대상 및 불공정행위 위반 확인 대상을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기술인, 건설근로자 등 건설공사관계인¹²⁾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건설공사가 공정하고 적정하게 시공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 채용을 청탁하거나 특정인의 채용을 강요하는 행위, 특정한 건설기계 등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장비나 자재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의 발생을 금지하기 위한 안 제38조제4항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91

12) 개정안 제26조 주요내용

제26조(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 수행 등) ⑦ 건설사업관리자는 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건설기술인 및 건설근로자 등 건설공사 관계인(이하 “건설공사관계인”이라 한다)이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